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30,871,825	27,926,149
일 반 회 계	712,693,071	21,380,792
특 별 회 계	218,178,754	6,545,357
공 기 업 특 별 회 계	94,323,593	2,829,707
○ 상수도사업	64,849,200	1,945,476
○ 하수도사업	29,474,393	884,231
기 타 특 별 회 계	123,855,161	3,715,650
○ 의료급여기금	2,716,962	81,508
○ 도시개발	5,922,000	177,660
○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	720	21
○ 기반시설	292,350	8,770
○ 도시교통사업	41,350,425	1,240,512
○ 도시재정비촉진	13,522,479	405,674
○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	19,831,002	594,930
○ 생활폐기물처리시설	20,951,795	628,553
○ 도시재생	3,227,428	96,822
○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	16,040,000	481,2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『세입·세출 예산』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